

의안번호	2207445
의 퇴 인	민형배의원
회 답 일	2025.1.14.
추계번호	25D0189
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“지방자치단체”에 지방의회를 추가하고,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둬	의무규정
2	안 제8조(감사기구의 장의 임용)	- 시·도의회는 장을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함 -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제2항·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고,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·운영하고 그 심사를 거쳐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16조(감사담당자의 임용)	- 시·도의회는 장을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하고,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- 시·도의회는 장을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,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23조(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)	시·도의회는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고,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8조(감사기구의 장의 임용)	
3	안 제16조(감사담당자의 임용)	
4	안 제23조(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)	

2. 상세 사유

-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(안 제2조, 제8조, 제16조, 제23조)
 - 개정안은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를 두고,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다만, 현행법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, 소속 공무원의 규모, 예산 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체감사기구의 규모에 따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부여하도록 하고¹⁾, 감사담당자의 임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²⁾,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과 감사담당자의 직급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이 각 지방의회마다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추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

1) 제14조(감사기구의 장의 직급)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, 소속 공무원의 규모, 예산 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체감사기구의 규모에 따라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.

2) 제16조(감사담당자의 임용)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